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58호 2014.11.25.(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2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2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4. 1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위치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C-1	45	4	2,421.4	공동건축권장 (1~4)	C-1	45	4-1	699.0	공동건축권장 (1~4-4)
							4-2	417.4	
							4-3	730.0	
							4-4	575.0	
소계		2,421.4		소계		2,421.4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기준 마련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도모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부분 삭제
 - 제17조(구성등) 제7항
-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 제20조 제1항 제4호 신설 :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20조 제3항 신설 :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를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 중 당해”를 “기능 중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수액중”을 “징수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2항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등)”을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5인이내”를 “25인 이내”로, “고문외에 3명이내”를 “고문 외에 3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 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u>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u>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단체”란 관할 <u>구역내</u>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p> <p>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u>각호</u>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u>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구역 내</u>----- ----- -----.</p> <p>제3조(원칙) ----- ----- ----- ----- <u>각 호</u>----- -----.</p> <p>1. ~ 5. (현행과 같음)</p>

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 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생략)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

-----.

----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② ----- 기능 중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④ (생략)

제7조(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징수액 중 -----

-----.

④ -----
----- 해당 -----

-----.

⑤ -----

----- 따라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② (생략)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14조(보고) ①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 20일
이내-----
-----.

⑥ -----

----- 위원 중-----

-----.

제1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에
따른-----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지도·점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문서로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야 하며, 당연직 고문외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② -----

20일 이내-----
-----.

제14조의2(지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제16조(기능) ①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
-----25인 이내-----

----- 고문 외에 3명 이내-----

있다.

② 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

② -----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 중

⑥ (현행과 같음)

⑦ <삭제>

⑦ (현행 ⑧항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신설>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4호 부터 제6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년가장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모자보건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00%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다문화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5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행정규제개선 및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 봉사자수당에 대한 재정비
- 주민자치센터 강사채용 부분 및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명확화
- 알기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검단5동 분동에 따른 제5권역 정비
 - 제3조 수정 : 검단5동 분동(2013.9.2.)에 따른 제5권역 정비
- 행정규제개선사항에 따른 조항 문구 삭제
 - 제11조 :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문구 삭제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부분 삭제
 - 제12조의 2 :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및 시설이 상이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별 성격에 따라 능동적인 운영을 위해 삭제

- 주민자치센터 강사채용의 우선순위 삭제
 - 제22조 : 능력 있는 강사 채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와 해당분야 자격증이 강사채용 기본 조건에 포함되어 우선순위 부분 삭제

-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기간 명확화
 - 제28조 :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삭제
 - 제30조 : 인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검단4동”를 “검단4동, 검단5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를 “수강(사용)료는”으로,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를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기준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 제5호을 삭제한다.

제26조(종전의 제27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7조(중전의 제28조)제1항중 “따른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고”를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로 한다.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제30조를 삭제하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2호,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2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권역별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제5권역(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u>검단4동</u>)</p> <p>제11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u>수강(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 반환한다.</u></p> <p>1. ~ 4. (생략)</p> <p>제12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 <u>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u></p>	<p><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p> <p>-----</p> <p>제3조(권역별 운영)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검단4동, 검단5동</u></p> <p>제11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 <u>수강(사용)료는</u>-----</p> <p>-----</p> <p>----- <u>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 <u>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u></p>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 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22조(강사채용의 우선순위) 신

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의 결 원 발생으로 인한 강사채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자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자

제23조 ~ 제27조 (생략)

제27조(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등 서식)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 ~ 제26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26조(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등 서식) -----

-----.

1.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별지 제25호서식)

6.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주민자치위원 모집)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29조 (생략)

제30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31조 ~ 제33조 (생략)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5호서식)

제27조(주민자치위원 모집)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 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삭제>

제29조 ~ 제31조(현행 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별표]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내)	비 고
강 사	일반강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0,000원	○ 1회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 가산 지급할 수 있음. ※ 단, 초과시간은 1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봉사분야		봉사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		
전화		휴대폰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센터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상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지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가능분야)			지원이유		
E-mail			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년월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담당강좌
	생년월일	-		1.
	주 소			2. 3.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기 간	주민자치센터 강의 경력 등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령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추천사유 (신청사유)			

위의 사람을「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취

□ 조례 제17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지서식(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